

瑞山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

■ 改正背景

-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『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』가
 - 지난 '98.7.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'98. 4.月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“개정조례표준안”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■ 主要内容

-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 하도록 함.
- 기금은 서산시 지정금고에 예탁관리 하되
 - 기금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비율을 정하고 있음.
- 기금의 용도를 정하여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.
-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없으므로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함.

○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

- 시장소속하에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고,
-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는 “기금의운용계획”, “기금의 운용계획의 변경사항”, “기금의 결산”, “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”임.

■ 檢討意見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'98. 4월 행정자치부에서

- 자치단체에서 제정·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영·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

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, '96.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『지방자치단체 기금총람』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,

-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가 업무미숙 등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어 마련한 『개정조례표준안』 과 '98.7.16일 개정된 『지방재정법시행령』 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○ 다만,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표준안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이후 현재까지

- 재해대책 기금운영관리에 큰 문제점이 없었는지와 그동안 어떻게 운용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.

※ 참고자료 : 개정조례안과 관련조례안 비교표(별도배부)